제 2 8 3 회 거 창 군 의 회 정 례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2024.12.9.)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행	정	과	1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1
4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14
5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6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원발의)	행복	나눔	과	25
7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30
8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i>		34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 ^호 담		산 관	39
10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구	교육	과	52
11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i>"</i>		56
1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	기업	과	61
13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	정책	l과	66
14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72
15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문회	관굉	과	81
1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i>"</i>		86

$_{-}$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_{-}$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기존 조례가 가지고 있던 용어의 이중성 및 군의회 동의 절차의 혼란을 축소하고,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을 향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다. 군의회 동의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8조~제14조)
- 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함(안 제16조)
- 사. 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아. 운영지원의 근거를 정함(안 제19조)
- 자. 지도·감독, 감사, 성과 평가 등을 정함(안 제21조~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행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9. 20. ~ 9. 25.

나) 예고결과: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신재화 의원이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 된 안건으로,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u>현행 조례에서 혼동이 있는 부분을 명</u> <u>확히 구분</u>하여 업무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u>의회 동의</u> <u>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 기간 제한, 동의안 작성내용 명시</u>를 통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군의회 동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이라는 기간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정함.

혀행

제4조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 받아야 한다. 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 **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개정안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 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 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 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 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 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 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 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 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민간위탁 사무명
 -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 5. 민간위탁 기간
 - 6. 민간위탁 예산

-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 에 필요한 사항
- 계약체결 내용과 민간위탁 기간을 정함(안 제5조)

'협약'에서 '계약'으로 용어를 바꾸고, 민간위탁계약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함. 하지만, 위탁기간 제한은 지자체 마다 3년과 5년으로 상이 하며, 도내에서는 산청, 창원, 통영에서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혀했

- 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 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 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안

-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 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민간위탁의 목적
 - 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 을 말한다) 및 주소
 -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 4. 민간위탁 기간
 -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 로 한정한다)
 -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이 라고 파단됨.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 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_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_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민선8기 후반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신규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구 확대함(안 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3절)
 - 1) (현행) 3국 2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5과**) **3사업소** 12읍면 (조정) 3국 2담당관 **14과** 1의회 2직속기관(**6과**) **4사업소** 12읍면
 - 2)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 3)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 4) 거창골프장사업소 신설
- 나. 정원 조정함: 총수 변동 없음(안 별표 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1. 18.~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공약사업 수행과 신규사업 추진 동력 확보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것으로써

구 분	기 구 표	비고
당초	3국 2담당관 13과 2직속기관(5과) 3사업소 12읍면 / 167담당	
개편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기관(6과) 4사업소 12읍면 / 170담당	

① 문화관광과 분리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신설)



②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 : 미래농업과



③ 거창골프장사업소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u>기관별 정원 조정</u>(제27조,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는 기존의 <u>796명으로 변동없음</u>
- 「지방자치법」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 조에 따라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행정기구 개편은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 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 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거창군의 문화, 예술, 농업, 체육 등 전반적으로 군민과 밀접한 업무임에도 입법예고 기간이 4일 밖에 되지 않음.
-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중복업무 통합, 쇠퇴 업무 인력 감축, 군정 대형사업, 신규사업, 핵심사업 등을 위주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신설된 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충실히수행해야 할 것임.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 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24 - 142호

$_{-}$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_{-}$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근거 및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 1) 위임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 폐지
 - 2)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 모두 폐지됨
 - 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 제3조)
 - 나) 자치분권협의회(현행 제6조~제11조)
 - (1) 협의회는 최초 신규 위촉식만 하고 회의 개최 실적 없음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지원(안 제12조)
 - (1) 자치분권 촉진사업을 하는 기관·단체가 없어 지원 실적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4.~11. 13.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상위법령 폐지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u>「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u> <u>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9430호로 2023년 7월 10일</u> <u>폐지</u>됨에 따라 상위법이 폐지된 조례임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u> 폐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임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u>군수</u>·구청장<u>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있다. [본조신설 2018. 3. 20.]</u>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 2. 부칙 제21조제22항: 2024년 3월 29일
 - 3. 부칙 제21조제41항: 2024년 1월 18일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제5조(생략)

의안번호 제2024 - 143호

_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장의 고령화·임기 등 현 실 태에 맞게 장학생 선발 조건을 확대·완화하여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정비함(안 제2조의2)

(현행)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

(변경) <u>이장</u>

다. 법령 재기재 등 정비함(안 제3조,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수요조사 후 2025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5. 29. ~ 6.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학생 수 감소, 이장의 임기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정비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 -「지방재정법」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 소요예산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 <u>학생 수 감소</u>, 이장의 고령화, 임기 등 <u>현실에 맞게 조례 운영상</u>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장의 근속연수 및 경력을 삭제하여 수혜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 신설(제2조)
- 장학생의 자격 완화(제2조의2)
 - ┗ 2년 이상 근속 조건 삭제
- 법령 재 기재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8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통·</u> 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년 3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97.3%)가 운영 중임.
- 또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는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리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지급 대상, 선발 기준·과정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도 있으며, 경남도내의 경우 고성군과 창녕군은 '1년 이상 근속'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근속 규정없이 '이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u>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u> 가. 생략
 - 2. <u>주민의 복지증진</u> 가. 생략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u>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u>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 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1 일반보전금	04.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

의안번호 제2024 - 144호

$_$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_$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이장의 건강보호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능률과 주민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1) 2025년 예산 35,400천원 추경 확보 예정
 - 2) 도비 6,600천원 확정 통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5~11.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검토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전부 개정(시행2023.08.03.)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 2. 이장 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3. 이장 · 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내 지자체별 조례개정 현황(2024.11.25.기준)

시군	조례개정	시군	조례개정	시군	조례개정
창원시	×	진주시	0	통영시	×
사천시	0	김해시	×	밀양시	\bigcirc
거제시	0	양산시	0	의령군	×
함안군	0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circ
함양군	0	거창군	×	합천군	0

- 거창군 2024년 이장 관련 예산지원 현황

항 목	예 산 액
• 기본수당	월 40만원
• 회의참석(월 2회) 수당	1회 2만원
• 명절 상여금	연 200%
• 복지 도우미 활동수당	월 10만원
•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130,000천원
•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3,000천원
• 이장 자녀 장학금	18,100천원
•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4,000천원
• 이장 및 군민 표창패	9,900천원
• 이장 단체복 지원	5,000천원
•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30,000천원
• 모범이장 연수 및 행사참석	20,000천원

-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 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382조 4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 보다 19조원 가량 적은 수치로 그만큼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 덧붙여, <u>국책연구원들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10조~20조</u> 원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이는 지난해 '56조 세수평크'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인 상황에서, 지난 11월 4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방교부세가 올해 당초 교부결정액보다 경남도는 356억원, 도내 18개 시군은 1,951억원 등 총 2,307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밝힘.
- 이에, 우리군의 경우 2024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7.94%에 불과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97억원의 결손이 발생함에도 이와 같은 고정비용을 늘리는 것은 재정 운용상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 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생략
 - 주민의 복지증진
 가. 생략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u>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업무추진비
 - 2. 지방보조금
 -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4. 7. 30.] [행정안전부훈령 제358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의안번호 제2024 - 138호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_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김향란의원 대표 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거창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제17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2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19. ~ 11. 25.(7일간)
 - 나) 예고결과: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에 맞추어 <u>장애인과</u>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 <u>거창군</u>의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59,720명이고, <u>등록장애인은</u> 4,96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3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u>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행한 2023 티지털정보격차</u>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 ▶ <u>장애인 가구의 이용 가능한 PC 보유율</u>은 60.1%로 일반국민 66.3%에 비해 6.2%가 낮고,
 - ▶ 모바일 스마트폰 보유율은 89.2%로 일반국민 96.1%에 비해6.9%가 낮은 수준임
 - ▶ 또한, 인터넷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87.5%로 일반국민 90.8%보다 3.3% 낮고, SNS나 메신저, 개인 블로그 등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장애인이 일반국민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과 일반인의 정보격차가 다소 있으며, 더 이상 정보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 려와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u>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u> 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 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 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u>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u>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24 - 148호

_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_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거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 복지를 증진하여 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사업,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정함(안 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향후 비용 발생 시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 연간 2.000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거창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5항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u>통계청</u>이 지난 9월에 발표한 <u>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u> <u>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u>로, 향후계속 증가하여 <u>25년에 20%</u>, <u>36년에 30%</u>, <u>50년에 40%를</u>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거창군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57명(2024년 10월말 기준)으로 거창군 전체인구 59,720명의 31.91%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 * 국제연합(UN) 기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고령화사회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 또한, 군에 등록된 <u>장기요양기관은 50개소에 장기요양요원은 1,322명</u>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u>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u>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필요함.
 - □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현황(2024년 10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비고
계		50	1,322	
시설	노인의료 복 지시설	9	267	
7 H 7 L	재가노인복지시설	24	652	
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	17	403	

🔴 관련법령 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의안번호 제2024 - 149호

$^-$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속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 미신고 경로당의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보호 와 지원을 받는 신고된 경로당으로 양성화하여 지역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4조)
 - 1) 시설 규모, 설비 기준 등의 요건을 정함
 - 2)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에 한정하여 지원
- 나.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정비함(안 제6조)
- 다.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정비함(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노인복지법」 제36조·제37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경로당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관련 보건복지부 방침
- 나. 예산조치: 2025년 추계예산 1,174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3.~11.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미신고 경로당의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노인복지법」제36조·제37조·제47조, 시행령 제24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미신고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은 연간 5백만원으로 예상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친목도모와 여가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 신설(안 제3조)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수 있다.

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 하고 있을 것

가. 읍: 10명 나. 면: 7명

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

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 지워 품목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2호)
-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 지워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고려(안 제5조)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u>노인의</u>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활성화 사업 지워 근거 정비(안 제6조)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 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 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불필요한 사항 삭제(안 제7조~제9조)

- <u>올해 제22차 민생토론회(2024.3.21.)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u> 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u>'경로당 식사제공 단계적</u> 확대추진 방안'에 따라 미등록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u>실제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지만</u> 시설, 인원 등의 요건 미달로 온전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전국 1600여 개가 해당됨에 따라, 소외된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u>냉난방비와 양곡비, 위문품 등을 지원</u>하고자 하는 것임.
 - ⇒ <u>우리군 등록 경로당 435개소, 미등록 경로당 8개소, 3회 추경 시 미등록</u> 경로당 난방비 1,200천원 예산 편성
-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u>느슨한 경로당 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u>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으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 관련법령 발췌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 2. 경로당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24 - 140호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위배사항,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용어 및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여성가족부 권고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 불부합 정비
 -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 가) 거창군 삶의 쉮터 설치·운영 조례
 - 2) 수탁자 등의 책임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제3조)
 -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 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 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3)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함(안 제4조)
 - 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나.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용어 및 인감증명서 정비(안 제5조·제6조)
 - 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2)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7조·제8조)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거창 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 「양성평등기본법」: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 성가족부 권고)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행정대집행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9.~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시행령 제18조
 - 「행정대집행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양성평등기본법」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조례 8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 불부합 정비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수탁자 등의 책임 범위와 행정재산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함.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여성가족부 권고 포함)

혅했

제7조(기구 및 인원) 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 하되,「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 법」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 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 〈삭 제〉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손해배상 범위개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수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 또 는 취소되었을 경우에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시설 관리·운영 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거창군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그 귀속에 관하여 별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 <삭 제>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 가 삶의 쉼터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개정안

제7조(기구 및 인원) 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 하되, 「노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 법」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 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u>「여성발전기본법」</u> 을 준용한다.	<u>「양성평등기본법」</u> 을 준용한다.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삭 제></u> 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 또는 수 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 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u>사</u> 제>수탁자 등의 책임범위 개선	

□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 구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 <삭 제>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 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가 원상복 개선 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 일로 부터 7일이내에 사용자가 인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로 처 분할 수 있다.

나. 용어순화, 인감증명서 삭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정비권고로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 실'로 '유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개정하고. 「거창군 지역 지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 서식에서 '인감증 명서' 삭제.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인용법령을 개정하였음.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행정안전부 정비권고)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	
준(제41조 관련)	준(제41조 관련)	
5. 보건소	5. 보건소	
장애자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행정안전부 정비권고)

현행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장제·유족보상(<u>기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u>)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혂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 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이 하 "읍면"이라 한다)에 ○○읍면 주민 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u>법 제28조제2항제3호</u>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③ (생략)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 하여 <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u> 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 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범 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거 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읍면 주민자 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u>법 제40조제3항제3호</u>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 3.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등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③ (현행과 같음)

□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성가족부 권고)

혅행

제3조(출입제한구역) 청소년출입제한 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 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 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 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 5.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 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안

제3조(출입제한구역) 청소년출입제한 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 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3.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 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 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 지적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 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u>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 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u>계약을 위한</u>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22. 1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일부개정.]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생략~

다. 계약의 해지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u>다음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 야 하다.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관련)
- 2)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 2)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 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겨우
 -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중(2024년, 2022년)

워안 검토안 및 검토의견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 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3.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 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삭제 검토 필요>

○원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고,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제6호에 따라 적용될 것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삭제 검토 필요>

○ 이 조례에 따른 캠핑장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행정재산)에 해당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 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도록 하며,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하고 있는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서는 계약 내용 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계약 해제·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고시"라 함) 제10조제4항 및 별표 4 제7호 다목1)에서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계약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령에 규정된 계약의 해지 사유 외에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법제처 의견제시 17-0270 참조).
따라서 원안 제14조의 경우 구청장과 수탁자간 위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면 될 것으로보이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은 낮아 보임.

□ 「양성평등기본법」

가.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제2024 - 145호

$^-$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 청년친화도시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5조)
-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정함(안 제6조)
- 마. 기초조사 및 정책조사, 홍보 및 교육,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2)「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5억원 확보예정(국·도·군비)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5.~11.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청년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23. 3. 21. 개정된 <u>「청년기본법」제24조의6</u> <u>'청년친화도시'</u> 조항 신설과 2023. 9. 12. 개정된 <u>「청년기본법</u> 시행령」제21조의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조항 신설에 근거하여
 - 우리군의 청년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서 <u>배포한 보도자료</u>에 따르면 <u>2024년부터</u>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226개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5년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 지정된 도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u>청년친화</u>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19년 자체 공모사업으로 2022년까지 4개 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도비를 예산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에, 우리군은 <u>「거창군 청년기본 조례」</u>와 함께 <u>지역의 청년</u> <u>들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참여</u>할 수 있도록 <u>제도적 기반을</u>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u>일회성 행사나 현금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u>, 지역 청년 들의 의견 수렴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u>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u>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 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 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의안번호 제2024 - 157호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수요 맞춤형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학비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 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이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 요

1) 근 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2) 출 연 금: 3,753백만원(증 58백만원)

구 분	2024년 편성액	2025년 요구액	증 감
계	3,695	3,753	58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	500	500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780	338	△442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3)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338백만원)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500백만원)
 - ⇒ 신규 추진사업이며, 2025년은 각 대학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나. 부서의견

- 1)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 2)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출연금 증액 필요
- 3) 2025년 등록금 지원 예산액은 2024년 1학기 한국승강기 대학교의 등록금 수납 결과 장학금 수혜대상의 실납부액을 재산정하여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나. 거창군장학회 현황: 책자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년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을 (재)거창군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u>총 요구액은 3,753백만원으로</u>,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장학기금 확대, 장학사업 추진에 지원하고자 함.
- <u>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500백만원은 2025년 신규 사업</u> 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임.
- 장학회 확대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 약 개 요

❖ 사업기간: 2022. ~ 2026.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군 9,000 만 1,000)

- 출연금 90억원(연 22.5억원 × 4년), 모금 10억원(연 2.5억원 × 4년)

❖ 사업내용 : (재)거창군장학회 장학기금 200억 달성(100억 → 200억)

❖ 추진방법 : 기본재산 100억원, 출연금 90억원, 모금 10억원

❖ 장학회 재산 현황

(2024. 6. 25. 기준 / 단위 : 원)

합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부심사전	비고
16,552,923,132	15,000,000,000	1,364,169,808	87,803,444	

○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합계	2022	2023	2024
7,589	665	3,229	3,695

○ 거창군장학회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비고
14,040	2,363	11,677	2023.12.31.기준

- 거창군장학회 출연 근거
-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근거
-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 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워 근거
-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조신설2023.6.28.)
- ⇒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임(의안번호 2024-146호)
 - 거창군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비 비율은 0.94%로 채 1%가 되지 않음. 그마저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비중이 0.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평생교육 예산임.

- 이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학생인구 유지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거창군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고정비용을 늘리는 것은 다른 분야의 지원사업에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의안번호 제2024 - 146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현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대학교 재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에 열 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등록금 지원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함(안 제4조)
 - 1) 현행)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변경)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예산 범위: 해당 경비의 지출을 위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군 회계의 세출예산에 실제 계상(計上)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20-0002)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676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0. 30.~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검토
 -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선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u>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u> 지원 범위를 군수의 재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 지원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고등교육법 제7조

□ 사립학교법

-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u>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 (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은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겠으나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천억원 가까이 늘린 5조 3천여 억원으로 편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에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형평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대학 졸업 후 다시 관외로 주소를 옮기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u>너나없이 대학생에게만 지원</u>하는 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서 <u>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이나 국가장학금을 받는 청</u> 년에게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음
- <u>승강기대학과 재학생에게 매년 338백만원이 지원</u>되는 만큼 2024년 본예산 기준 7.94%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 3. 농림 수산 상공업 등 산업 진흥
-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절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u>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u>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번호 제2024 - 147호

_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_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정함(안 제6조)
- 나. 법령 개정사항 및 불부합사항, 문장 등 정비(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2,100천원 확보예정(위원수당)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0.~10.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1호)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법령불부합 사항 등 정리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 -「지방자치법」 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 연간 소요예산은 2,100천원으로 예상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르면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

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 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자문한다.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운영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2호, 2024. 1. 2., 일부개정]

- 제2조(정의) <u>"사회복지사 등"이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 (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4. 1. 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 및 <u>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u>과 구성·운영 등<u>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2호, 2024, 7, 2., 일부개정]
-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2.>
 -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 6. 14.]
-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u>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24 - 158호

_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_ _검 **토 보 고 서**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① 거창아트갤러리 건립(건물의 신축)
 - 1. 제안이유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1) 사 업 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2)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일원(정장공원 일원)

3)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간)

4) 사 업 비 : 8,823백만원(공사비 7,363백만원)

5) 주요내용 : 전시실, 수장고, 교육 및 체험공간 등 전시예술 향

유를 위한 시설물 건립

나. 취득재산 내역

사업명	토지소재지	신축규모	기준가격 (백만원)	미고
거창아트갤러리건립사업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일원	연면적 : 1,504㎡ (지상 2층)	7,363	신축

다. 추진경과

- 1) 2022. 8. : 공약사업 확정
- 2) 2022. 12.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3) 2023. 4. ~ 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4) 2023. 7.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 5) 2023. 7. : 2023~2027년 3단계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반영
- 6) 2024. 2. ~ 10. : 건축기획 용역
- 7) 2024. 9. :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의뢰
- 8) 2024. 10. :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라. 향후계획

- 1) 2024. 11. : 군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 2) 2024. 12. ~ 2025. 3. : 건축 설계공모 시행
- 3) 2025. 3. ~ 2025. 8. : 실시설계 용역
- 4) 2025. 10. : 공사착공

마. 기대효과

- 1)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 보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수요 충족
- 2)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의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 여건 개선
- 3) 지역 관광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 5. 사업비 산출 내역 : 책자 참조

② 유기농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이유

가. 남상면 월평리에 추진 중인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의 2단계 조성 사업으로 모두농장(유기농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소비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유기농복합단지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 공급하고자 토지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1) 사 업 명 : 유기농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

2)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4) 사 업 비 : 600백만원(군비 600) ※ 토지, 영농 보상비

5) 사업내용 : 모두농장 조성(임대형 스마트팜, 유기농 체험형 농장)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즈기げ산	비고 (공시지가)	
		소 재 지	지목 면적(m²)			
		5필지		8,017.6	170,565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5	답	2,018.5	42,389	21,000/m²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6	답	2,005.5	41,915	20,900/m²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7	답	542.5	11,718	21,600/m²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8	답	1,463.6	31,613	21,600/m²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9	답	1,987.5	42,930	21,600/m²

다. 추진경과

1) 기본계획 수립 승인 : 23. 10.

2) 취득재산 감정평가 : 24. 10.

라. 향후계획

- 1)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 25. 1.
- 2) 토지보상협의 매수 : 25. 6.

마. 기대효과

- 1) 소비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지역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 확대
- 2)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보

3. 관련법규 및 조례 : [첨부2] 참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 5)「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제110조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책자 참조

③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1. 제안이유

- 가. 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가중
- 나. 유동인구 증가 등 따라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1) 사 업 명 :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 2) 위 치 :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등 6필지
- 3) 취득면적 : 토지 4,024㎡

4) 사업기간 : 2025 ~ 2026년(2년간)

5) 사 업 비 : 5,800백만원(도비 2,900백만원, 군비 2,900백만원)

- 취득비 : 4,200백만원, 공사비 : 1,600백만원

6) 사업내용 :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1식(150면)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쟂삽		재 산 소 재 지		취득가격	취득	취득 사유	비고	
十世	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평가)	시기	사유	-1
계				4,024	4,197,032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주차장	3,037	3,167,591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1-1번지	답	84	87,612		자주식 공영 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1-2번지	답	100	104,300	2025.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3-15번지	임야	286	298,298	~2026.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25-8번지	답	496	517,328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6-14번지	답	21	21,903			

※ 기준가격: 가감정평가 / 토지

다. 추진경과

1) 2024. 5. : 거창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용역 시행 군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2) 2024. 6. : 25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사전수요조사 경남도 제출

3) 2024. 7. : 25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경남도 제출

4) 2024. 11. : 경남도 25년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확정 통보

라. 향후계획

1) 2024.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2) 2025. 1. ~ 5. :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 2025. 6. : 공사 착공

4) 2026. 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1)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흡수로 주차난 해소 및 양방향 불 법 주차 감소로 차량 교행 원활
- 2)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제공으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
- 3. 관련법규 및 조례 : [첨부2]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1] 참조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5조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생략 ~
-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① 거창아트갤러리 건립(건물의 신축)건은
- <u>거창아트갤러리는</u>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정장공원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에 전시실, 수장고,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구성됨.
- 이는, 지역 내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공 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의 재정 상황, 향후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립해야 할 것임.
- 또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지역 내 다양한 예술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여건을 개선하는 등 <u>거창만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완성해</u>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유사한 예로 <u>신달자 문학관</u>의 사례를 살펴보면 <u>당초 목적과는</u> 달리 거창예술인의 집으로, 또, 수차례 <u>매각</u>을 시도했으나 유찰 되었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숙소로 활용되었 으나, <u>2025년에는 신달자 문학관으로 다시 변모</u>할 계획임.
- 덧붙여, 읍면 구석구석에 <u>노후화돼 미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활용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u> 하는 등 '신축'에서 '재생'을 통해 <u>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u>해 볼 필요도 있음.

② 유기농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건은

- 해당 토지 매입건은 <u>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등 5필지 8,017㎡를</u>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과 유기농체험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 추진하고 있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1단계 조성사업과 연계 하여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팜과 유기농 체험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1단계에서 조성하는 레스토랑, 판매장 등에 납품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비는 평당 230천원(영농보상비 포함) 정도 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1단계 조성사업

O 기 간: 2022년 ~ 2026년 (5년간)

O 규 모 : 부지면적 31,887㎡(건축연면적 3,100㎡)

O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O 사 업 비 : 180억원(국비 9,000, 도비 2,700, 군비 6,300)

O 주요시설 : 에코힐링센터(레스토랑, 카페, 판매장, 체험장, 교육장 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2단계 조성사업

O 기 간 : 2025년 ~ 2026년 (2년간)

O 규 모: 8,017㎡

O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외 5필지

O 사 업 비 : 12억원(군비) / 부지매입 6억원, 조성비 6억원

O 주요시설 : 유기농 체험농장,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텃밭분양 등

○ 갈수록 심각해지는 <u>기후위기에 식량 안보가 중요한 과제</u>로 떠오른 만큼 <u>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u>, <u>귀농귀촌</u>, 청년 <u>농업인 유치</u>에도 스마트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u>임대형</u> <u>스마트팜과 유기농체험농장이 조속히 추진</u>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③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건은
-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등 6필지, 4,024㎡를 매입하여 도비 29억원, 군비 29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지주식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차면수는 150대 임.
- 이 지역은 <u>대형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u>해 있어 <u>출퇴근 시간대 및</u> <u>특정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심각</u>해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 불편을 호소하는 곳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u>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u>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

-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거창군 문화센터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며.
- (재)거창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거창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
- (재)거창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 문화복지 향유 기 회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건물)

1)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김천리 216-5번지 등)

2) 연 면 적 : 4,582.31 m²

3) 건축면적 : 2,658.48 m²

4) 소 유 자 : 거창군

- 5) 사 업 비 : 13,160백만원
- 6) 사용·수익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7) 허가대상: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거창군수)
 - ※ 토지 : 15,820m²(소유자 거창군)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 ◎ 사용료 감면(면제): 159,855,551원
- 1) 건 물: 1,897,911,855원(시가표준액)
- 2) 토 지 : 1,299,199,176원(공시지가 488,700원/m²)
- 3) 사용료 산출 : 3,197,111,031원 × 50/1,000(요율) = 159,855,551원

4)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다. 추진경과

- 1) 2024. 10. : (재)거창문화재단 무상 사용·수익 허가 신청
- 2) 2024. 11. :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라. 향후계획

- 1) 2024. 12.: 무상 사용수익허가(재산보존 책임, 원상태로 반환 등)
- 2)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무상사용

- 마. 기대효과
 - 거창문화재단에서 다양한 공연·전시 기획, 프로그램 등 거창군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및 조례: [첨부2]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1조, 제24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5조
 - 라.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 마.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문화센터를 (재)거창문화재단에서 3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 사용허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법인 ·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u>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u>을 위한 경우
- <u>거창문화재단은</u> 군민의 높은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 예술도시로서 전국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u>2017년 1월 경남도</u>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 <u>거창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화장실</u> 등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 된 시설물을 **3년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u>사용를 감면</u>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거창군이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u>거창문화재단에 무상 사용수익허가는 타당</u> 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제2024 - 160호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 대 상:(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O 사 업 비 : 1,426,125,000원

- 2025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4년	2025년		재	원	별	
사립기선	예산액	요구액*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25년	1,260,212	1,426,125	1,426,125	-	-	1,426,125	

O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10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나. 부서의견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 이후 운영 9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등 기획·운영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
-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제1항, 제2항

4. 참고사항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현황 : 책자 참조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출연금-인건비,경상적 경비): 책자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u>2025년도</u> 거창문화재단 인건비와 경상경비 1,426,125천원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u> 출자금<u>호연금</u>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4조(운영재원 등) ① <u>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u>,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u>으로 충당한다.</u>
- ② <u>군수는 재단의</u> 설립과 <u>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
- 지난해 대비 165,91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 사무처장, 문화사업 2단장, 단원 신규채용
 - 인건비 상승률 반영
 - 성과급 도입(21,000천원)
 - 공공운영비 물가 상승 등이며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지원금액	976,000	1,154,610	1,260,212	1,426,125	재단 인건비.	
전년대비증감	증) 133,000	증) 178,610	증) 105,602	증) 165,913	세년 원선비, 시설관리비 등	
예산과목	계산과목 출연금(306-01)					

○ 본 출연안은 <u>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거창국제연극제,</u> <u>한마당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u>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u>거창문화재단에 1,426백만원을</u>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공석인 2단장에 연극전문가를 채용하 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사무처장, 문화사업 2단장, 단원 등을 채용할 계획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성과급 도입으로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임.
- 따라서, 거창문화재단은 홍보마케팅, 공연기획 등 창의적인 문화시책 및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바, 조례에서 규정된 문화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출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